

예 산 총 칙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7,390,193	14,021,706
일반회계	440,929,315	13,227,879
특별회계	26,460,878	793,826
공기업특별회계	14,111,190	423,336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11,190	423,336
기타특별회계	12,349,688	370,4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8,074	17,042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18,641	36,5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87,458	32,624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541,652	16,2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33,863	268,01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94,84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 포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